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3 . 6 . 1 5 . (목)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57
제출일자 : 2023. 5. 31.
회부일자 : 2023. 6. 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도기육 의원 외 19명

2. 제안 이유

- 현행 조례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법령의 위임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반영하기 위함.
-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서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다. 도지사가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물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물관리 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맑은물정책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6월 5일 ~ 6월 10일

○ 관계법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0조, 제21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8.6.12.제정·시행)(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조문의 통합 및 삭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5조제1항에서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물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물산업육성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육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물산업클러스터' 육성·지원 사항을 법 제15조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사항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9조는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규정으로 법 제20조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0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인력·정보 등의 교류 등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과 물산업 관련 기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 안 제12조는 도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물관련 국제행사 등의 지원 사항과 이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 의견

- 현행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27.) 이후 관련 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와 경상북도 물관리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 조례안의 법규형식, 내용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경상북도 물산업 정책개발 및 물산업 육성 예산

붙임 2. 경상북도 물산업 주요 지원 정책 현황(2022년)

붙임 3. 경상북도내 물산업 선도기업 현황(2022년)

붙임 1

경상북도 물산업 정책개발 및 물산업 육성 예산

(단위: 천원, 본예산기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32,820	292,820	715,820
1. 물산업 정책 추진	87,820	117,820	115,820
1) 물산업 육성	57,820	87,820	57,820
2) 세계 물의 날 행사	30,000	30,000	28,000
3) 워터밸리비즈니스워크	-	-	30,000
2. 물기업 지원 (물산업해외마케팅지원, 물산업선도기업지정운영)	245,000	175,000	400,000
3. 물관리정책추진 (경상북도통합물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	-	-	200,000

출처: 경상북도

붙임 2

경상북도 물산업 주요 지원 정책 현황(2022년)

기관유형	기관명	부속기관	물산업 지원분야	물산업 분야 지원정책	비고
공공	경상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통합물관리 물산업 정책 전반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 중
				선도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추진 중
				물산업육성협의회 운영	추진 중
				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 (22.4~10)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 진흥원 등 협업	물관리 기술개발	물산업 협력 커뮤니티	추진 중 (17.7~)
		대구시,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 협업	물기업 판로지원	2022년 워터밸리 비즈니스워크 개최	추진 중 (22.3.)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강소기업 육성실	해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네트워크 구축 등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지원)	추진 중
대학	영남대학교	경북도, 대구시 협업	물산업 인력양성	휴스타 물산업 혁신대학산업	추진 중

출처: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붙임 3

경상북도내 물산업 선도기업 현황(2022년)

지정연도	기업명	주요제품	종사자 수(명)	매출액(억원)
2016	(주)그린텍	펌프	27	102
2016	(주)기남금속	맨홀	39	109
2016	대진필터	수처리용필터	34	61
2016	(주)우리기술	유량계, 수위계	19	91
2016	(주)복주	SPE패널, 물탱크	12	48
2016	(주)세계주철	맨홀, 주철재	64	278
2016	(주)우진	교반기, 제어장치	18	31
2016	(주)에싸	하폐수처리장치	53	144
2016	한승케미칼(주)	수처리약품	27	186
2017	(주)동원기업	스테인레스 물탱크	28	90
2017	(주)미래인더스트리	상하수도 부품, 자재	21	47
2017	(주)시노팩스	수처리필터	120	975
2017	에너지밸브(주)	수처리밸브류	14	33
2017	(주)포웰	상하수시설운영	201	277
2017	(주)S&W Ind	수처리밸브류	35	213
2018	두리기업(주)	물탱크	37	155
2019	주식회사퍼펙트	상하수도관, 오수받이, 맨홀	19	32
2019	(주)한결테크닉스	지하수 양수파이프	11	13
2020	(주)시티에이	환경컨설팅, 친환경제품	21	20
2020	현대파이프(주)	수도관, 하수관	30	157
2021	(주)케이디	스마트 초음파 수도미터	60	100
2021	(주)태영필트레이션시스템	필터프레스 탈수기	33	92

출처: 경상북도